

연구윤리규정

제정일 : 2010년 01월 16일

개정일 : 2024년 04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정 (이하 '이 규정'이라 함)은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교수윤리헌장, 교수윤리강령, 교수윤리규정에 표명된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본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의 기획과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와 발표, 연구의 심사와 평가, 연구성과의 보급·적용·개발 등을 포함하여 연구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 이 규정은 본교 교수에게 적용되며 학부생, 대학원생, 본교 내에서 연구 또는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하 '연구자'라 함)에게 준용된다.
- 특정한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본교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특정한 연구분야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연구활동의 일반지침

제4조(관련법규 준수 의무)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 법령과 본교 규정 등 연구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 책임)

- ① 연구자는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연구활동이 공익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제6조(진실성)

- ① 연구자는 정직성과 진실성에 기초하여 연구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모든 연구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포함하는 모든 연구정보를 위조, 조작,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정성)

- ①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서 편견과 예단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바람직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공정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성)

- ①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연구참여자 사이에 연구와 관련한 데이터, 결과, 방법, 아이디어, 기법 및 도구를 공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기밀성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통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연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사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적재산권의 보호)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심사의 기본원칙)

- ①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업적을 심사하는 경우 그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심사자는 논문 및 연구과제 등을 포함하는 모든 심사에서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심사요청서에 따른 심사기한과 기밀을 지켜야 한다.
- ③ 심사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피심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활동 과정의 원칙

제1절 연구의 기획 또는 제안

제11조(주제와 방법 선택에 따른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주제와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윤리적 한계 고려 의무)

연구자는 연구를 기획하고 제안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와 관련한 사회적 위험과 윤리적 한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이익 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 의도 및 방법론의 공론화)

- ① 연구자는 연구의 의도와 방법론이 적절한지를 논의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연구참여자 사이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본부와 사전에 협의된 경우나 관련 규정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연구의 의도와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교본부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다만, 당해 연구와 관련된 규정이 별도의 갈등해결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사전 협의의무)

연구자는 연구사업이 개시되기 이전에 교내외 재정지원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문서에 명시하고 본교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권)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 표본, 연구 산출물 등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의 수행

제16조(관리 및 보존)

- ①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온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1. 연구절차
 2. 연구과정에서 받은 승인
 3. 연구과정에서 사용한 인용 출처
 4. 중간결과를 포함하여 연구수행을 통해 얻은 모든 데이터
-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을 통해 얻은 주요 기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방법 숙지 의무)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접근과 열람)

- ①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연구수행의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다.
- ② 연구책임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열람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문서에 의한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연구비의 집행)

연구자는 지원받은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법령과 본교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결과의 발표

제20조(저자)

- ① 저자란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연구의 기획,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도출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연구자를 말한다.
- ② 모든 저자의 연구역할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 ③ 저자 결정 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분야별로 따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자목록에 포함될 수 없다. 다만, 공동저자의 결정은 연구결과 발표 전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실질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를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저자의 책무)

- ① 교신저자와 책임저자는 논문데이터와 저자 표시, 연구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책임지며, 공동저자의 연구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을 진다.
- ② 저자들은 본교 또는 외부기관이 저자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22조(교신저자)

- ① 교신저자는 연구의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 ②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표시와 그 순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23조(서열 및 소속 표기)

- ① 공동저자의 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의 협의에 따라 연구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 ② 저자의 소속 표기는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 그러한 관행에 따를 수 있다.

제24조(인용)

- ① 저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하는 과정에서 인용출처와 참고문헌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저작물에서 인용하여야 하며 미공개 학술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저자는 타인의 이론적 견해나 아이디어를 참조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하는 경우에도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 ④ 저자는 널리 알려지거나 일반적으로 수용된 생각, 사실, 공식,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반드시 밝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권장된다.

제25조(지적 재산권 존중)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다른 연구자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6조(직무와 관련한 연구결과의 소유권)

연구자가 본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는 본교의 소유이므로 본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과 소유권의 귀속)

연구자가 소속기관을 옮길 때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없을 경우 데이터의 소유 또는 공유문제는 연구자와 본교 또는 연구기관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한다.

제4절 공동연구

제28조(공동연구의 기본원칙)

- 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자의 역할, 연구자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모든 연구활동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 ③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공동연구의 목표, 기대효과, 연구자의 선정, 연구의 방법론 결정,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연구책임자의 선정, 저자의 결정 및 순위기준, 지적 재산권과 소유권 문제 등 제반 사항을 상호간에 합의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책임자의 책무)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한 재정 지출, 연구참여자 교육, 데이터의 수집 및 보고,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활동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의 협약 체결, 연구비 수주와 집행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 연구책임자는 법령 및 본교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고 성별, 종교, 인종, 나이,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 조건 등에 따라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이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04.30.>
- ④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참여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
-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 관련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을 위한 관련규정을 준수함과 아울러 이를 위해 본교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부실학술활동 예방)

<신설 2024.04.30.>

- ①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를 활용해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자들이 연구결과를 논문 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30조(연구윤리교육)

- ① 연구참여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이 지침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바람직한 연구관행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장 부정행위와 부적절한 연구행위

제1절 부정행위

제31조(정의)

[본조 전부개정 2024.04.30.]

-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일반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2.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이나 본교에서 수립·시행한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5. 그 밖에 연구개발 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삭제>

제32조(예외)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연구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과실
2. 정직한 실수
3.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착위 또는 부작위

제2절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33조(정의)

- ①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부적절한 연구행위, 부적절한 집필행위, 부적절한 심사행위 등을 말한다.
- ②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제30조의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근절되어야 하는 대

상이 된다.

③ "부적절한 연구관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제33조 내지 제36조에서 정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행위에 한정되지만은 아니 한다.

제34조(부적절한 연구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고의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절한 연구행위로 간주된다.

1. 연구데이터를 부적절하게 기록·보존하는 행위
2. 연구참여자 사이에서 최초 연구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를 거절하는 행위
3. 적절한 검증절차 없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4. 연구책임자의 부적절한 연구관리 또는 지도행위
5.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6. 특허를 독점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자에게 특허 출원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는 행위
7. 연구업적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8. 연구비를 지원받으려고 기대효과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9. 인간피험자 보호와 실험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0.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하여야 할 연구결과를 수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게재하는 행위
11. 연구비 유용행위

제35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저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을 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행위
2. 논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3. 재인용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행위
4. 읽지 않은 저술의 출처를 인용하는 행위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자신의 텍스트를 적절한 언급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
7.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36조(부적절한 심사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심사행위에 해당한다.

1. 심사과제를 타인에게 부탁하여 심사하게 하는 행위
2. 심사중인 논문이나 연구제안서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3. 논문이나 연구제안서를 읽지 않고 사적인 접촉을 통해 심사·평가하는 행위
4. 재산상 이득을 얻기 위해 또는 학연, 지연 등의 사적 관계에 의해 논문이나 연구제안서를 불공정하게 평가하는 경우
5.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제3절 부정행위의 처리

제37조(부정행위의 처리)

[본조 전부개정 2024.04.30.]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검증, 처리는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며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엄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판정은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일반부정행위는 사안의 특성과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관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일반부정행위 검증 시 각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절차는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절 갈등의 조정

제38조(갈등의 정의)

"갈등"이라 함은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 연구의 목적, 연구활동의 수행 또는 금전적 관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제39조(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이 자신의 학문적 입장, 도덕적 가치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 경우 이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0조(연구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연구활동의 수행과정에서 동료교수, 학생, 본교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는 이를 공개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1조(금전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 ① 연구자는 연구의 진실성과 정직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을 쫓아 연구결과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결부된 창업이나 외부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을 부당하게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창업이나 외부활동을 위해 본교의 자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본교의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본교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정당한 비용을 본교에 지불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기관이나 본교의 금전적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 이 사실을 이해 당사자에게 공지하고 함께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사적 관계로 인한 갈등)

- ① 연구를 제안, 수행, 보고 및 심사하는데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야하며, 소속기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 ② 연구자는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하

는 경우 연구 착수 전 또는 연구 수행 중이라도 이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③ 연구자는 미성년자 또는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미성년자 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연구결과 (논문, 학술대회, 연구보고서, 특허 등 모든 유형의 연구성과물)를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본교에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자 및 학술단체 (연구비지원기관을 포함)에 보고해야한다. <개정 2022.4.8.>

④ 제3항과 관련하여 국가 및 관련기관에서 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르며, 본교의 신고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4.8.>

[본조신설 2020.12.31.]

제42조(갈등의 관리 및 조절)

①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본교규정에서 그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책무를 진다.

③ 연구책임자는 이해갈등의 당사자를 관리하고 연구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④ 중대한 갈등은 제3자에 의한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과 본교 규정에서 별도의 갈등조정절차를 정하지 않는 한 그 갈등은 원칙적으로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의한 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4장 생명연구윤리

제1절 인간 피험자 연구

제43조(임상시험과 임상연구의 원칙)

① 임상시험(인체를 이용한 연구)과 임상연구(인체에서 유래한 혈액, 체액, 조직 등을 이용한 연구)는 본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상시험과 임상연구는 인간 피험자 보호에 관한 헬싱키선언, 기타 국제적 지침 및 규정,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제1999-6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07150호)에 명시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임상시험과 임상연구를 정기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피험자의 복지와 안전을 해칠 요인이 있는 경우 그러한 시험 또는 연구를 중지시켜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의 과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피험자, 관련 연구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에 관련된 모든 기록과 자료 및 문서를 유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는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2절 인간 피험자 보호

제44조(충분한 고지와 서면동의)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연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피험자의 권리, 있을 수 있는 위험과 이익 등에 대하여 사전에 피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피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참가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피험자의 동의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연구나 시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피험자의 질문에 알기 쉬운 말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45조(인간 피험자 보호)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나 새로운 정보를 피험자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자로부터 새로운 동의서와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 ② 장애인, 임산부, 태아, 신생아, 아동,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부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피험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피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는 피험자로부터 얻은 연구데이터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밀유지가 어려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결과를 피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⑥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가 피험자 보호 준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책무를 진다.

제3절 동물 실험 연구

제46조(동물 실험 연구의 원칙)

- ① 인간 외 살아있는 척추동물을 연구와 교육에 사용할 경우, 연구자는 동물의 윤리적 사용,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동물을 사용하는 실험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동물 실험 연구자는 실험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이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동물 실험 연구자는 이러한 실험이 공중보건, 과학의 진보, 사회 공공의 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와 학생은 의무적으로 동물 대상 실험과 관련된 규정, 인도적 취급, 안전관리, 건강 위험 요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실험 동물의 안전한 관리, 보호, 사후처리 및 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교 동물실험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2010.1.16. 공포)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3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1조의2의 제3항과 제4항은 현재 수행중인 과제와 발표 예정인 연구결과물에도 적용한다.

부칙(2022.04.08.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1조의2 제3항의 신고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이 규정 공포 이후 최초로 접수된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04.30.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